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4. 2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4. 10. 홍지광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6. 4. 15.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6. 4. 2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한선미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홍지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1조,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의 고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재활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충급여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우리구 관내 등록장애인 수는 2026년 2월 현재 12,131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108명 임. 관내 장애인 수에 비해 공공기관에서 고용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한계가 있어 이번 조례 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구의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아울러 지원요건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설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2. 우리구 등록장애인 현황

(2026. 2. 28현재)

등급	장애인수	지체	시각	청각	발달 (지적, 자폐)	뇌병변	기타
계	12,131	4,786	1,399	1,928	1,206	1,229	1,583
심한	4,596	935	317	372	1,206	667	1,099
심하지 않은	7,535	3,851	1,082	1,556	-	562	484

3. 우리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보호작업장 4개소)

2025. 12. 31 현재

구분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우리마포보호작업장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마리스타보호작업장
위치	매봉산로 18, 2층(상암동)	신촌로26길 10,3층 (대흥동, 우리마포복지관)	월드컵북로 494, B2층(상암동)	충북 충주시 산척면 지속골길 17
면적	404.95㎡(122평)	227.67㎡(68평)	706.3㎡(214평)	1241.23㎡(376평)
시설장	하강택	변성환	김재일	김창동
운영주체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재단법인 푸르메	사회복지법인 마리스타 청소년복지재단
최초위탁	2009.1.1.	2011.10.1.	2015.12.30.	(설치일자)2004.4.1.
조직구성	8명 (시설장1, 종사자7) 시비지원6, 자부담2	5명 (시설장1, 종사자4) 시비지원5	5명 (시설장1, 종사자4) 시비지원4 구비지원1	10명 (시설장1, 종사자9) 시비지원6 자부담2
주요사업	제과제빵, 청소용역, 소독방역	디퓨저, 고주파, 골프공 포장, 쇼핑백	임가공, 패션 악세사리 열수축포장	상장케이스, 문서파일류, 인쇄물, 판촉물인쇄
이용인원	27(근로21, 훈련6) 심한장애 27명	23명(근로20, 훈련3) 심한장애 23명	26명(근로21, 훈련5) 심한장애 26명	32명(근로22, 훈련10) 심한장애 30명/ 심하지않은 장애 2명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1인)	364천원	172천원	199천원	1,844천원
훈련장애인 월평균 훈련수당 (1인)	92천원	89천원	80천원	405천원
2026년 예산	운영비: 430,685천원 (시비 90: 구비 10) 관리비: 12,000천원 (구비 100)	운영비: 320,703천원 (시비 90: 구비 10) 관리비: 15,000천원 (구비 100)	운영비: 292,646천원 (시비 90: 구비 10) 인건비 및 관리비: 50,000천원(구비 100)	운영비: 431,411천원 (시비 100, 재배정)

4. 타 자치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현황

(2025.12 기준 단위: 명/ 천원)

구분	시설 수	근로장애인 수		훈련 장애인 수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인구수	순위
		장애인 수	최저임금 적용		근로장애인		훈련 장애인		
					상위30%	하위30%			
서울시	5	159	100(62.9%)	33	1,367	716	134		
평균	5.12	102.4	27.8	52.1	785.2	360.9	94.8		
종로구	3	105	0(0.0%)	0	631	301	22	5,538	24
중구	1	20	18(90.0%)	0	2,096	532	0	5,094	25
용산구	1	13	0(0.0%)	16	238	150	100	6,695	23
성동구	4	49	18(36.7%)	44	419	302	125	10,603	21
광진구	3	53	3(5.7%)	38	504	212	122	11,981	19
동대문구	4	49	11(22.4%)	40	454	314	52	15,039	14
종랑구	5	89	7(7.9%)	74	598	316	106	19,988	6
성북구	1	18	0(0.0%)	12	448	348	130	16,825	10
강북구	2	45	35(77.8%)	22	1,068	847	76	16,609	11
도봉구	3	77	50(64.9%)	18	836	683	25	15,120	13
노원구	9	132	33(25.0%)	141	624	359	96	25,361	2
은평구	8	127	7(5.5%)	88	465	206	118	21,099	3
서대문구	2	33	12(36.4%)	16	1,361	230	30	11,710	20
마포구	4	84	13(15.5%)	24	792	498	153	12,178	18
양천구	4	63	21(33.3%)	51	782	211	74	17,713	9
강서구	10	215	18(8.4%)	101	486	146	70	27,618	1
구로구	9	299	113(37.8%)	33	1,188	416	169	19,579	7
금천구	7	108	26(24.1%)	84	739	397	178	12,227	17
영등포구	2	61	30(49.2%)	14	1,105	408	80	14,774	15
동작구	4	82	27(32.9%)	54	871	292	67	13,911	16
관악구	4	168	122(72.6%)	11	1,238	560	103	20,008	5
서초구	4	84	28(33.3%)	64	905	415	33	10,179	22
강남구	9	202	65(32.2%)	100	705	438	115	15,517	12
송파구	12	150	5(3.3%)	147	521	197	150	20,115	4
강동구	13	235	15(6.4%)	112	556	246	176	19,453	8

※ 음영: 조례有/ 진한글씨: 훈련수당 등 지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